

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소개 ■

2011. 11. 24. 선고 2008헌마627 기소유예처분취소 : 인용결정

김영수 변호사

1. 헌법재판소는 2011년 11월 24일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,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2008년 형제 40219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(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검사)이 2008년 7월 28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.

헌법재판소는 2010년 7월 29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의료법조항 등에 대하여 합헌결정(2008헌가19등)을 하였는데, 이 사건은 위 결정과 달리 의료법조항 중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.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비록 '구사'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'침사' 자격을 갖고서 오랫동안 뜬 시술행위를 하여 온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뜬 시술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. 이에 관하여는 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(재판관 이동흡)이 있었습니다.

2. 다운로드 : [2008헌마627 선고 기소유예처분취소](#)